

# Q&A

위한 썸네일  
법제코너

인터넷 및 PC통신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되면서 지적재산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코너에서는 정보제공업자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과 창업에 필요한 법률 상식을 Q&A 형식으로 제공한다.

## ■ 조소연/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정책연구과



외국영화의 대본을 주요장면의 이미지 파일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용허락 없이 대본 및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 상에 올려놓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A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영화의 대본을 이용허락 없이 인터넷 상에 서비스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가. 둘째, 영화의 주요장면을 이용허락 없이 인터넷 상에 서비스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인가. 셋째, 외국 영화도 국내에서 보호대상이 되는가. 넷째, 비영리로 운영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영화의 대본, 즉 시나리오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나리오 작가는 시나리오에 대한 복제, 공연, 방송, 배포 등의 권리를 가집니다. 시나리오를 인터넷 상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서버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으면 복제권 침해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올해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전송권이 신설되었으므로 개정 저작권법이 효력을 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제권 이외에 전송권의 침해도 구성하게 됩니다. 한편 만일 시나리오가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인 경우에는 원저작자와의 이용허락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영화의 주요 장면의 이용이 저작권 침해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영화는 둘 이상의 독립된 영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내용을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독립된 각 영상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영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는 자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법은 제76조에서 영상제작자는 녹음을 복제·배포하거나 공개상영 또는 방송에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영화의 주요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자인 영화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상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한편

영상저작물에 참여한 실연자도 이에 대해 권리를 향유하는지가 의문인데, 우리법은 영상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개상영, 방송할 권리가 특약이 없는 경우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영화의 이용을 위해서는 영상제작자의 허락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되는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리'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각 장면들에 대한 이용이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창작물로서 이용하는 것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국의 영화도 보호의 대상이 되는가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우리법 제3조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의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는 i)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가 되는 국가의 저작물인 경우 ii) 우리나라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우리나라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포함)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맨처음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저작물 포함)인 경우이며 단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상용하게 보호하는 경우에 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국가의 영화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사적이용으로서 저작권 침해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7조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비스하는 것은 비록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을지라도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적이용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보호대상이 되는 외국영화의 장면과 시나리오를 이용허락없이 인터넷상에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반드시 해당 저작권을 보유하는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의: sycho@dpc.co.kr